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서 민 의 금 융 생 활 지 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 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(제42조)

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

나.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(제47조의2)

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금”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”을 “자금”이란”으로, “차입금을 말한다”를 “자금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
 - 가.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
 - 나.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3.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

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”를 “제55조의2제2항제8호”로, 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(이하 “자활지원계정”이라 한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
 - 가.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
 - 나.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3.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비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 <u>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”이란</u> <u>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</u> <u>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</u> <u>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</u> <u>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</u> <u>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</u> <u>의 차입금을 말한다.</u> 1. <u>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</u> <u>의 차입금</u> 2. <u>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</u>	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 <u>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”이란</u> <u>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</u> 1. <u>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</u> <u>완계정(이하 “보완계정”이라 한</u> <u>다)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</u> <u>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</u> <u>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</u> <u>의 차입금</u> <u>가.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</u> <u>터의 차입금</u> <u>나.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</u> 2. <u>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</u> 3. <u>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</u> <u>의 위탁사업비</u>
제47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조성)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금”이란 <u>같은 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운</u> <u>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</u> <u>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</u> <u>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</u>	제47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조성) 법 제55조의2 제2항제8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금”이란 <u>다음 각</u> <u>호의 자금을 말한다.</u> 1. <u>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</u> <u>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</u> <u>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</u>

다. <u>1.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의 차입금</u> <u>2.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</u>	<u>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 는 다음 각 목의 자금</u> <u>가.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의 차입금</u> <u>나.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</u> <u>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</u> <u>3.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 무의 위탁사업비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3